#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0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고용진·김경협·김수흥

김주영 • 박상혁 • 양정숙

오영환 · 윤후덕 · 이탄희

임호선 · 정일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 고자 함.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 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총칙(안 제1장)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안 제2장)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의 취소 등을 정함.

# 다. 주세의 보전(안 제3장)

주세 보전 명령, 가격 신고,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제조 원료의 종 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을 정함.

# 라.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안 제4장)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을 정함.

# 마. 보칙(안 제5장)

견본 제출 요구, 장부 기록의무, 수수료, 주류업 단체 등을 정함.

# 바. 벌칙(안 제6장)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

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 가능(안제3조)

- 아.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 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제정(안 제17조)
- 자.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19조)

# 참고사항

- 1)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8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세의 보전(保全), 주류거래의 안전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 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때「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 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 3.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종류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용할수 있는 식품을 첨가하는 경우. 다만,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이해당 주류를 제조장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등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주세법」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

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 ⑤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수 있다.
- ⑥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주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 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 제7조(면허 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 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 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 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9.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10.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경우
- 11.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 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절 면허등 승계, 상속 등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면허등의 상속)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 제3절 주류 제조·반출 및 판매 정지

-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 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 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 여야 한다.
  - 1. 제3조제8항 전단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경우
  - 2. 제3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 3.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주세법」 제6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5. 「주세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6. 제8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 장을 이전한 경우
- 7. 제22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제26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6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9.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10. 「주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주세를 포탈한 경우
- 12. 주세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13.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제8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 2. 제23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 3. 제26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 2.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제8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

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 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7.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11.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등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

-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 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 (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3. 제3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4.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
- 6.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반출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7. 제23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8.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 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 우

- 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 가. 탁주: 50만원 이상
  - 나. 탁주 · 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
  -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
  - 라. 맥주: 1천만원 이상
- 11.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 12.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 13.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
-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 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 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 17.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

는 경우

-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 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 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 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③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 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 중 "1,000분의 100 미만"은 "1,000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1,000분의 100 이상"은 "1,000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 제3장 주세의 보전

- 제17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이 장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제20조 또는 제21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을 말한다.
  - 2. 제18조에서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을 말한다.
  - 3. 제19조에서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 4. 제19조 또는 제20조에서 "주류 제조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 제18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 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 출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 제22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糧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 2.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3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납세 또는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수 있다.
  -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4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면세받은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제조・판매 등의 신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장부 기록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27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면 세받은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 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 제28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 분을 검정(檢定)한다.
- 제29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 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검사와 승인)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31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① 세무공무원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 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 2.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 3.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 3. 제23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 제34조(면허등의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 2.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3.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제35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 3.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4. 제14조에 따른 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밑술·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 5. 제16조에 따른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 제36조(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벌칙

- 제37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 가. 제18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 나. 제23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3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 3. 제29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 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 제3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4 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

- 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제조장 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 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주세법」 제6조"를"「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 ⑤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